

영등포구의회
제19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9. 14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74호로 2015년 9월 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전환되는 직종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반영 및 직종개편에 따른 조문 일부 개정 (안 제4조제8호)
- 나. 직종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 (부칙 제2조)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
- 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 임용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이 개정(2013.12.12 시행)되어 “계약직공무원”이 “임기제공무원”으로 전환되는 등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기타 중앙부처 기관장 명칭 변경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이에 따라, “임기제공무원”의 종류를 “일반임기제공무원은”¹⁾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²⁾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정의하였음.
- 기타, 정부조직법 개정(2014.11.19)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(행정자치부장관)이 인사혁신처장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, 법령 띄어쓰기, 법령명에 낫표(「」)를 첨부 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1)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

2)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

1

지방공무원법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, 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"경력직공무원"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2.11.>
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,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3. 삭제 <2012.12.11.>

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2.11.>

1. 정무직공무원
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
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3. 삭제 <2012.12.11.>
4. 삭제 <2011.5.23.>

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1.5.23., 2012.12.11.>

[전문개정 2008.12.31.]

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(이하 "임기제공무원"이라 한다)을 임용할 수 있다.

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12.11.]

2 지방공무원 임용령

제3조의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12.30.>

1. 일반임기제공무원: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
2.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: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(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
3. 한시임기제공무원: 법 제63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3제3항·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

[본조신설 2013.11.20.]